

해외자원개발조사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21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촉진을 위하여 2023년도 해외자원개발조사 국고보조금의 집행계획 및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3년도 해외자원개발조사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지급기준

1.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보조대상사업	예산액	보조대상자
☐ 해외자원개발조사	1,351백만원	해외자원개발추진사업자 한국광해광업공단

2. 보조기준

가. 보조대상자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이하 “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나. 보조대상 사업비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해외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의 비용 등
 -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에 소요되는 경비

(1)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조사활동에 필요한 기술지원, 광체 부존구역 파악 및 탐광을 위한 시추조사 등 기초탐사 비용지원
 - 해외자원개발추진사업자의 기술 지원요청 프로젝트에 대해 개발 잠재성 판단을 위한 광해광업공단이 시행하는 현지 사전조사 비용
- ※ 조사대상지역에 대한 기존 조사 자료의 열람·구입·처리·해석에 소요되는 직접비용과 민간자원개발 전문가 조사비용 포함
- 정부간 자원협력 공동조사, 광체 부존 현황 확인, 유망광구 발굴을 위해 수행하는 본조사 비용
- 조사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2) 해외자원개발 기반구축사업

- 광물자원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한 자료구입비, 자료번역비, 위탁조사비, 발간비, 도면제작비, 데이터베이스구축비, 자원정보망 시스템 유지관리 및 현지조사비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다. 보조비율

(1)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 보조비율(기업 지원 보조비율의 10%는 예비보조율로 운용 가능)
 - 대기업 : 보조대상사업비의 50%이내
 - 중견기업 : 보조대상사업비의 60%이내
 - 중소기업 : 보조대상사업비의 70%이내
 - 개인 : 보조대상사업비의 60%이내
 - 광해광업공단 : 사업운영관리비, 현지조사비용 등은 실비 보조
-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약칭 중견기업법) 제2조에 의한 기업으로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신청서 제출시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한함
-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으로서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신청서 제출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한함
- 보조비율 우대
 - 신청업체가 기초탐사에 대하여 국내 광산개발기업 및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기업을 활용하는 경우 보조비율은 보조대상사업비의 20% 우대

- 신청업체가 핵심광물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 보조비율은 보조대상사업비의 20% 우대

* 단, 우대 보조율 최대 한도는 20%임

※ (보조비율 우대 예시) 중소기업의 경우 보조대상사업비의 70% 이내 + 20 % 보조비율 우대를 합산하여 보조대상사업비의 90% 이내 보조

(2) 해외자원개발 기반구축사업

- 보조대상사업비의 90% 이내

3. 보조대상사업의 관리 및 보조금 지급

가. 보조대상사업의 관리위탁

-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과 기반구축사업은 광해광업공단 사장에게 위탁함

나. 보조대상사업의 신청 및 보조금 지급

- 보조대상사업으로 결정받고자 하는 해외자원개발추진사업자는 광해광업공단 사장에게 조사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공고 이후 연간 수시로 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함
- 지원신청 접수된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고, 연간 사업시행 완료 이후 60일 이내에 사업결과를 평가함
-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에 대한 선정 검토기준은 첨부 1과 같음
- 보조금 지급대상 범위는 교부결정 이후 시행 분으로 함. 단, 최초(1차) 교부결정 건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행 또는 발생된 분을 적용하며,

2023년 11월 이후에 선정된 사업은 사업수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기 연도까지 연속하여 지원할 수 있음

- 기초탐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은 해외자원개발추진사업자가 해당 조사를 완료한 후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광해광업공단 사장에게 제출하면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이를 검토하고 해당 소요비용을 당해 연도에 각각 정산 지급함
- 보조대상사업의 신청, 검토, 결정 등 보조금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광해광업공단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바에 의함

다. 보조금 사업계획, 교부결정, 실적보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1)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연간 보조금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2)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보조대상사업별로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교부결정을 득하여야 하며,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3)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30일까지 분기별 보조사업 수행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4. 부 칙

- (1)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첨부> 1.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선정 검토 기준
2. 기초탐사 사업시행조건
(별첨 1) 기초탐사 관련 제출서류 양식
3.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 첨부 1 >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선정 검토 기준

□ 기초탐사(사전조사) 사업선정 검토항목 : 총점 7점 이상 심의회 상정

① 대상광물의 자원개발필요성

검 토 기 준		비 고	배점
I 등급	· 전략광종 · 핵심광물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의 “1.광물” 중 광산물수급통계 또는 무역협회 수출입통계 기준 최근 3년간 평균 수입액 미화 1억불 이상 광물	· 우라늄, 유연탄, 철, 동, 아연, 니켈 · 핵심광물 종류 및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 발표(“23.1분기 잠정)에 의함 · 금, 은, 연, 무연탄	3
II 등급	· 기타 희소금속 · 상기광종 이외에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의 “1. 광물” 중 광산물수급통계 또는 무역협회 수출입통계기준 최근 3년간 평균 수입액 미화 1천만불 이상 1억불 미만 광물	· 핵심광물 외 기타 희소금속 · 고령토, 금강석, 규석, 규사, 석회석(대리석), 운모, 천연석고, 활석, 규조토, 형석, 인광석	2
III 등급	· 상기광종 이외에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의 “1.광물” 중 광산물수급통계 또는 무역협회 수출입통계기준 최근 3년간 평균 수입액 미화 1천만불 미만 광물 또는 수입액 산정이 곤란한 광물	· 사문석, 수은, 사금, 사철, 사석, 석면, 염, 카리광, 바륨광, 루비, 사파이어, 유황 등 I, II, IV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국외광물	1
IV 등급	· 분쟁광물	· 10개 대상국(DR콩고, 콩고, 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내 4개 보류광종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일 경우 상정제외	보류

② 광산소재국의 투자환경

검 토 기 준		비 고		배 점
Ⅰ 등급	· 광종별 주요 부존국 및 2대 중점지역 (중남미, 동남아·대양주)	광종	해당 국가	2
		유연탄	호주, 중국 인니, 러시아, 미국	
		우라늄	카작, 캐나다, 호주, 나제르, 나미비아, 러시아, 남아공	
		철	호주, 브라질, 러시아, 캐나다, 인도, 중국, 우크라이나	
		동	칠레, 페루, 인니, 호주, 러시아, 멕시코, 미국	
		아연	중국, 호주, 페루, 멕시코, 러시아, 카작, 인도	
		니켈	인니, 호주, 브라질, 러시아, 필리핀, 중국, 캐나다	
		핵심 광물	DR콩고, 가봉, 그리스, 남아공, 남아프리카, 노르웨이, 러시아, 마다가스카르, 멕시코, 모잠비크, 미국, 미얀마, 베트남, 볼리비아, 브라질,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인니, 인도, 중국, 짐바브웨, 칠레, 카작, 캐나다, 케냐, 쿠바, 키르기스스탄, 탄자니아, 터키, 페루, 핀란드, 필리핀, 호주 ※단, 분쟁광물인 경우 Ⅲ등급	
Ⅱ 등급	· 광종별 주요 부존국 및 2대 중점지역 이외의 국가(전체광종)			1
Ⅲ 등급	· 외교부적색경보국가(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적색경보국가는 제외) · 외교부흑색경보국가 · 외국인투자금지국가	· 상정 제외		보류

③ 대상광산의 개발 가능성

검 토 기 준		비 고	배 점
Ⅰ 등급	매장량 부존 및 개발잠재성 양호	· 기존 보고서, 소재국 지질 정보 검토 · 수집자료에 대한 매장량 (또는 잠재력), 시장성, 인프라 여건 등을 기존광산과 비교검토 ※ 단 V 등급일 경우 상정제외	5
Ⅱ 등급	매장량 부존 및 개발잠재성 다소 양호		4
Ⅲ 등급	매장량 부존 및 개발잠재성 보통		3
Ⅳ 등급	매장량 부존 및 개발잠재성 다소 불량		2
Ⅴ 등급	매장량 부존 및 개발잠재성 불량		보류

④ 사업 참여실적

검 토 기 준		비 고	배점
I 등급	해외자원개발사업 직접개발 경험 있는 자 및 국내자원개발자	· 국내외의 채광/선탐/제련/가공 사업 운영실적 보유 · 사업관리능력/시장개척능력 등 사업 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	2
II 등급	국내·외 자원개발사업 참여경험이 있는 자	· 국내외의 탐사/채광/선탐/제련/가공 사업 참여경험 보유	1
III 등급	기타	-	0

☞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0.5점의 가점 부여(중복 해당시 최대 1.5점까지 인정)

- ① 자원개발 부진광종인 우라늄 및 동광
- ② 핵심광물(산업통상자원부 발표, '23.1분기 잠정)
- ③ 정부간 협력 후속사업 및 동반진출사업
- ④ 국내 광산개발기업 및 국내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 기업 활용
- ⑤ 중소기업 추진사업
- ⑥ 자원개발 해외인턴십 참여기업
- ⑦ 신규 일자리 창출기업
- ⑧ 해외자원개발 투자 후 생산물 국내반입 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개인

☞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0.5점의 감점 부여(최대 1점)

- ① 최근연도 말 기준 과거 3년간 중도포기된 사업(2회 이상 시 감점 1점)
- ② 기초탐사·지분인수타당성조사 사업시행조건 제7조제4항의 3년간 프로젝트
진행상황 보고의무 미이행 보조대상자

□ 기초탐사(본조사) 사업선정 검토항목 : 총점 9점 이상 심의회 상정

* 2회 이상 기지원사업의 경우 심의위원회 상정 시 추진업체측에서 사업설명 실시

① 대상광물의 자원개발필요성

검 토 기 준		비 고	배점
I 등급	· 전략광종 · 핵심광물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의 “1.광물” 중 광산물수급통계 또는 무역협회 수출입통계기준 최근 3년간 평균 수입액 미화 1억불 이상 광물	· 우라늄, 유연탄, 철, 동, 아연, 니켈 · 핵심광물 종류 및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 발표(“23.1분기 잠정)에 의함 · 금, 은, 연, 무연탄	3
II 등급	· 기타 희소금속 · 상기광종 이외에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의 “1.광물” 중 광산물수급통계 또는 무역협회 수출입통계기준 최근 3년간 평균 수입액 미화 1천만불 이상 1억불 미만 광물	· 핵심광물 외 기타 희소금속 · 고령토, 금강석, 규석, 규사, 석회석(대리석), 운모, 천연석고, 활석, 규조토, 형석, 인광석	2
III 등급	· 상기광종 이외에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의 “1.광물” 중 광산물수급통계 또는 무역협회 수출입통계기준 최근 3년간 평균 수입액 미화 1천만불 미만 광물 또는 수입액 산정이 곤란한 광물	· 사문석, 수은, 사금, 사철, 사석, 석면, 염, 카리광, 바륨광, 루비, 사파이어, 유황 등 I, II, IV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국외광물	1
IV 등급	· 분쟁광물	· 10개 대상국(DR콩고, 콩고, 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내 4개 광종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일 경우 상정제외	보류

② 광산소재국의 투자환경

검 토 기 준		비 고		배 점
Ⅰ 등급	· 광종별 주요 부존국 및 2대 중점지역 (중남미, 동남아·대양주)	광종	해당 국가	2
		유연탄	호주, 중국 인니, 러시아, 미국	
		우라늄	카작, 캐나다, 호주, 나제르, 나미비아, 러시아, 남아공	
		철	호주, 브라질, 러시아, 캐나다, 인도, 중국, 우크라이나	
		동	칠레, 페루, 인니, 호주, 러시아, 멕시코, 미국	
		아연	중국, 호주, 페루, 멕시코, 러시아, 카작, 인도	
		니켈	인니, 호주, 브라질, 러시아, 필리핀, 중국, 캐나다	
		핵심 광물	DR콩고, 가봉, 그리스, 남아공, 남아프리카, 노르웨이, 러시아, 마다가스카르, 멕시코, 모잠비크, 미국, 미얀마, 베트남, 볼리비아, 브라질,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인니, 인도, 중국, 짐바브웨, 칠레, 카작, 캐나다, 케냐, 쿠바, 키르기스스탄, 탄자니아, 터키, 페루, 핀란드, 필리핀, 호주 ※단, 분쟁광물인 경우 Ⅲ등급	
Ⅱ 등급	· 광종별 주요 부존국 및 2대 중점지역 이외의 국가(전체광종)			1
Ⅲ 등급	· 외교부적색경보국가(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적색경보국가는 제외) · 외교부흑색경보국가 · 외국인투자금지국가	· 상정 제외		보류

③ 대상광산의 개발 가능성

검 토 기 준		비 고	배 점
Ⅰ 등급	매장량 부존 및 개발잠재성 양호	· 기존 보고서, 소재국 지질 정보 검토 · 수집자료에 대한 매장량 (또는 잠재력), 시장성, 인프라 여건 등을 기존광산과 비교검토 ※ 단 V 등급일 경우 상정 제외	5
Ⅱ 등급	매장량 부존 및 개발잠재성 다소 양호		4
Ⅲ 등급	매장량 부존 및 개발잠재성 보통		3
Ⅳ 등급	매장량 부존 및 개발잠재성 다소 불량		2
Ⅴ 등급	매장량 부존 및 개발잠재성 불량		보류

④ 본조사 지원필요성

검 토 기 준		비 고	배 점
I 등급	3개 항목 평가점수의 합이 3점	· 탐사목적의 적합성, 경제성 광상 부존 가능성, 탐사예상효과 등을 검토 - 탐사목적의 적합성 : 광상 위치/규모 미확인 사업(1점), 기확인 사업(0점) - 경제성 광상 부존가능성 : 양호한 사업(1점), 기타사업(0점) - 탐사예상효과 : 매장량 신규확보 사업(1점), 기타사업(0점) ※ 단 IV등급일 경우 상정제외	3
II 등급	3개 항목 평가점수의 합이 2점		2
III 등급	3개 항목 평가점수의 합이 1점		1
IV 등급	3개 항목 평가점수의 합이 0점		보류

⑤ 사업 참여실적

검 토 기 준		비 고	배 점
I 등급	해외자원개발사업 직접개발 경험에 있는 자 및 국내자원개발자	· 국내외의 채광/선광/제련/가공 사업 운영실적 보유 · 사업관리능력/시장개척능력 등 사업 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	2
II 등급	국내·외 자원개발사업 참여경험이 있는 자	· 국내외의 탐사/채광/선광/제련/가공 사업 참여경험 보유	1
III 등급	기타	-	0

☞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0.5점의 가점 부여(중복 해당시 최대 1.5점까지 인정)

- ① 자원개발 부진광종인 우라늄 및 동광
- ② 핵심광물(산업통상자원부 발표, '23.1분기 잠정)
- ③ 정부간 협력 후속사업 및 동반진출사업
- ④ 국내 광산개발기업 및 국내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 기업 활용
- ⑤ 중소기업 추진사업
- ⑥ 투자여건조사 또는 사전조사 연계사업
- ⑦ 자원개발 해외인턴십 참여기업
- ⑧ 신규 일자리 창출기업
- ⑨ 해외자원개발 투자 후 생산물 국내반입 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개인

☞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0.5점의 감점 부여(최대 1점)

- ① 최근연도 말 기준 과거 3년간 중도포기된 사업(2회 이상 시 감점 1점)
- ② 기초탐사·지분인수타당성조사 사업시행조건 제7조제4항의 3년간 프로젝트 진행상황 보고의무 미이행 보조대상자

< 첨부 2 > 기초탐사 사업시행조건

□ 기초탐사(본조사) 사업시행조건

제1조 (목적) 본 기초탐사 사업시행조건(이하 “사업시행조건”이라 한다)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선정 및 교부 결정된 기초탐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조대상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업시행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행방법) ① 기초탐사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내용과 사업시행조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단, 정부기관간 협력탐사·공동탐사사업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수행한다.

② 교부결정통지를 받은 보조대상자는 기초탐사를 직접 시행하거나 국내·외 해당분야 시행업체(이하 "용역업체"라 한다)를 선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 보조대상자의 현지법인(지분참여 포함)이 수행한 조사 및 탐사사업 등은 보조대상자가 직접 수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보조대상자는 사업시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책임진다. 단, 보조대상자의 신청 또는 사업관리상 필요시 광해광업공단은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보조대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정부기관간 협력탐사·공동탐사사업은 본 사업시행조건을 대신하여 정부간 협정이나 계약 등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다.

- 정부기관간 협력탐사·공동탐사사업은 상호간 약정이나 협정 또는 쌍방간 계약 등에 근거한 세부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고, 보조금교부 신청 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교부결정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다.
- 사업비는 교부 승인된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집행되고, 상대측 정부기관이나 합작파트너의 자금집행요청(내역 첨부)에 의해 타당성 검토 후 지급될 수 있다.
- 단, 사업내용이나 수행방법 변경 시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조 (용역업체의 선정 등) ① 보조대상자가 용역업체를 선정, 계약 및 착수할 때에는 광해광업공단 사장에게 용역계약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부결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되는 기 장비 및 기술인원, 세부 조사항목별 수행방법, 일정계획에 관한 사항
2. 용역업체의 탐사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
 - 주요 탐사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 사업수행 실적

② 국고보조 신청 시 국내 용역업체 견적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사업의 경우, 국내 용역업체를 선정, 계약하여야 하며, 해외현지업체로 변경 시 광해광업공단 사장의 사전변경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4조 (사업기간의 연장) 보조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광해광업공단 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시험시추의 시공여부 및 시공설계) ① 당해연도 기초탐사결과에 대한 시험시추를 수행할 경우, 보조대상자는 시험시추를 제외한 현장조사 작업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¹⁾에 그 조사결과를 광해광업공단 사장에게 필히 통보하여야 하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그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 또는 광해광업공단 직원의 현지 현황 조사에 근거하여 시험시추의 시공여부 및 세부 시공설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만일, 조사 작업이 지연되어 시험시추가 사업시행 예정기간 내에 준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실하게 예상되는 경우 시험시추 작업시행을 취소시킬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변경) 보조대상자는 조사 중 조사 대상지역, 조사방법, 시공량, 시공업체 변경 등의 교부결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광해광업공단 사장에게 변경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승인액 이내에서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승인 없이 변경 시행할 수 있으나, 지체 없이 "기초탐사(본조사) 변경보고서"를 제출, 변경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 광황 및 지질의 심한 변화로 인한 조사 대상구역 및 조사방법의 일부 변동
2. 천재지변, 변란 등과 이에 준하는 급박한 사유로 보조대상 사업량의 감량이

¹⁾ 이하 업무일(Business day) 기준임.

요망될 때

3. 시공결과에 따라 가감이 필요한 시료분석

4.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시공업체 변경이 있을 경우

제7조 (보고) ① 보조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자를 기점으로 50일 이내 및 사업 착수 후 15일 이내에 착공보고서(교부결정 통보접수 이전에 착수한 사업자는 통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공 및 경과보고서)를 광해광업공단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험시추를 완료할 경우, 보조대상자는 시험시추의 현장검사를 위해 시추공사 예정준공일 7일 이전에 준공예정 보고(구두 등)를 필히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대상자는 매분기 말일을 기점으로 "기초탐사 경과보고서" 양식에 의거 진행상황 및 자금집행 현황 등을 광해광업공단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조대상자는 당해 보조받은 사업에 대하여 차년도부터 3년간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광해광업공단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현장검사) ① 지급될 보조금을 확정받기 위해서는 보조대상자는 검수 요청서를 제출한 후, 광해광업공단의 현지확인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 시행자가 조사사항과 결과에 대한 제출서류 검토로 사업시행 사항 및 그 효과가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현장검사를 생략한 사업에 대해 해당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수행사항, 조사결과 및 효과를 기술한 보고서를 보조금 지급신청시 제출토록 해야 한다.

제9조 (현장검사 준비) 지구화학탐사, 지구물리탐사, 트렌치 및 시굴정, 시험시추, 물리검층 등 조사 작업에 대한 현지검사를 시행할 경우, 보조대상자는 작업수행 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검사를 받을 때까지 교부승인조건에 부합되는 작업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기초자료 및 작업일지를 보관하고, 다음과 같이 검사준비를 하여야 한다.

○ 지구화학탐사

- 각 시료별 채취 및 전처리과정 사진, 지형도, 시료채취 위치 주변 지질도, 및 GPS 트래킹자료(또는 루트맵) 등을 준비해야 한다.
- 지구물리탐사
 - 탐사수행 사진(장비 운용장면 포함), GPS 트래킹자료(또는 루트맵), 지구 물리탐사 원시자료(Raw data), 결과 평면도 및 단면도 등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준비해야 한다.
- 트렌치 및 시굴정
 - 각 작업장마다 시공 전, 후에 작업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GPS 트래킹 자료(또는 루트맵), 작업결과 단면사진과 스케치 도면을 작성하여 준비해야 한다.
 - 광해광업공단의 현장검사를 위한 실측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원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 시험시추
 - 각 시추공별로 촬영된 작업현장 사진(시공 전, 종료 시), 시추공 위치표지판, 현장 암추주상도 및 시공일지를 필히 준비하여야 하며, 무암추 시추의 경우 시추공에 파이프 또는 철사 등 보공조치를 하여 심도검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시추로드 제거 동영상 촬영본을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 암추는 공별로 채취한 순서대로 암추상자에 보관하며, 암추상자 측면에 프로젝트명, 시추공명, 암추 규격, 상자의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실제 간격의 암추 채취구간을 상자 내에 표시해야 한다.
 - 무암추 시료는 공별로 채취한 순서대로 밀봉하여 암추상자에 보관하며, 암추상자 측면에 프로젝트명, 시추공명, 상자의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실제 간격의 무암추 채취구간을 상자 내에 표시해야 한다.
 - 채취 암추 및 각종 탐광자료는 광산물의 상업적 생산 시 까지 현지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광해광업공단 사장이 지정한 담당자의 승인 하에 채취된 암추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
- 물리검층
 - 각 검층 공별로 위치표지판을 포함한 물리검층 작업현장 사진(준비, 검층

장비 및 검측 진행과정), 검측 결과 로깅자료, 해석 단면도 및 결과 보고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제10조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① 보조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최종시한 11월 30일)에 보조대상사업 수행내역, 수행결과 및 효과를 기술한 조사결과보고서를 광해광업공단 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사업수행시 발생하는 특별한 사유(시공 지연, 장비고장 등)가 발생할 경우, 결과보고서 제출 연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는 별첨한 “조사결과보고서 수록내용(표준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토록 하고, 수록된 조사대상 항목은 사업별 교부승인내역 및 시행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선급금의 지급) ①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보조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대상자가 선급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광해광업공단 사장에게 선급금 지급신청서 및 기초탐사의 이행(선급금 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증권 또는 보증서(보조대상자 명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선급금 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증권을 제출할 때에는 보험 가입금액은 선급금의 110%, 보험기간은 사업기간에 60일을 가산한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조금의 사용) ① 보조대상자는 당해 보조금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의2 (선급금의 사용) ① 보조대상자는 당해 선급금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보조대상자는 광해광업공단이 지급한 선급금이 제1항에 따른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선급금 사용내역서 및 집행증빙서(송금영수증)를 선급금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광해광업공단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선급금의 반환) ① 보조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제16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3. 제12조의2에 따른 선급금 사용내역서 및 집행증빙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제 8조 및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액이 선급금보다 적은 경우

② 보조대상자는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선급금을 반환하는 경우 선급금을 지급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해외 광물자원개발자금융자 및 관리규정에서 정한 약정이자)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조금 지급신청을 위한 서류제출) 보조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최종시한 11월 30일)에 제10조의 조사결과보고서와 함께 보조대상사업의 사업비 사용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광해광업공단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특별한 사유(시공지연, 장비고장 등)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 제출 연기요청을 하여야 한다.

1. 용역업체에 대한 조사비 지불증빙서 : 용역업체를 수취인으로 한 당해연도 은행 발행 송금영수증(용역업체 수취증빙 포함). 단, 탐사를 총괄 수행하는 탐사용역 업체 또는 합작사에서 자금집행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들 업체에 대한 송금 영수증과 이들 업체가 조사용역업체에 지불한 증빙서.
2. 보조대상자 직접 시행 분에 대한 증빙서 : 수취인의 영수증, 지불증빙서 및 지불 행위와 관련된 내부규정 또는 계약서(단,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이후 시행분)
3. 그 밖에 조사결과 검증에 필요한 자료로서 광해광업공단에서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제15조 (보조금지급액 조정)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시의 산출 기준 내에서 사업시행조건, 조사보고서, 사업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보조사업 교부결정 승인액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금을 감액 또는 유보 조정한 후 지급한다. 단, 감액금액은 감액 전에 산출된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1조에 따른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감액한 후 지급한다.
2. 제6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당초 혹은 변경된 시행계획 및 조사방법에 부합되지 않는 시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제9조에 따른 현장검사 준비를 하지 않음으로서 확인되지 않은 시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교부결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조금 교부결정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대상자의 사정에 의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업포기서를 제출할 때
2.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자를 기점으로 50일 이내에 착공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해당사업 당해연도 심의회 재상정시 감점(0.5점))
3. 매분기 말일을 기점으로 15일 이내에 사업 추진경과 보고를 하지 않을 때
(※해당사업 당해연도 심의회 재상정시 감점(0.5점))
4. 사업 추진경과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제6조 제1호 및 제2호 규정을 제외한 경우로서 수행내역이 없는 경우
5. 제6조 제1호 및 제2호 규정을 제외한 경우로서 사업수행이 부진하여 사업기간 내에 교부 결정된 사업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때
6. 보조사업 수행에 있어서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부정행위가 있을 때

제17조 (보조금 교부신청 제한)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대상자에 대하여 향후 3년간 보조금 교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6조 제6호에 따른 부정행위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보조대상자
2. 제13조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이행보증보험을 통해 선급금이 반환된 보조대상자

제18조 (이행 확약서 제출) 보조대상자는 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을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외자원개발조사 기초탐사 이행확약서"를 광해광업공단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기타사항) ① 보조대상자는 위의 각 조항 이외에 광해광업공단이 필요로 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계획 또는 본 사업시행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광해광업공단과 보조대상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광해광업공단의 견해에 따라야 한다.

※ 「별첨 1」 기초탐사 관련 제출서류 양식

별첨 1**기초탐사 관련 제출서류 양식**

별첨 1-1. 해외자원개발조사 기초탐사 신청서

별첨 1-2. 기초탐사 사업계획서

별첨 1-3. 해외자원개발조사 기초탐사(본조사) 이행확약서

별첨 1-4.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

별첨 1-5. 기초탐사(본조사) 착공보고서

별첨 1-6. 기초탐사(본조사) 경과보고서

별첨 1-7. 기초탐사(본조사) 변경보고서

별첨 1-8. 기초탐사(본조사) 검수요청서

별첨 1-9. 기초탐사(본조사) 선급금 지급신청서

별첨 1-10. 기초탐사(본조사) 보조금 지급신청서

별첨 1-11.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후속경과보고서

별첨 1-1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별첨 1-1. 해외자원개발조사 기초탐사 신청서(양식)

해외자원개발조사 기초탐사	사전조사()	신청서
	본 조사()	

1. 프로젝트 내역

프로젝트명	광 중	소 재 지	사 업 단 계
			탐사() 개발() 생산() 기타()

2. 신 청 내 역(※해당사업만 기재)

사전조사	본조사
◦ 조사희망 요청시기 ◦ 요망사항	◦ 지구화학탐사 () ◦ 지구물리탐사 () ◦ 시 굴 정 () ◦ 트 렌 치 () ◦ 시 험 시 추 () ◦ 물 리 검 충 () ◦ 시 료 분 석 () ◦ 사업비용: ◦ 착수(예정)일 : ◦ 완료(예정)일 : ※ 항목별 복수신청 가능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전 화
상 호

Fax() -

휴대폰
(인)

담당자	성명	전화☎	휴대폰	이메일
-----	----	-----	-----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첨부서류

필수(공통) 제출서류	기타(공통)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광업권 사본, 광구도 사본 각 1부 2. 권리관계 증명서류(계약서 등) 3. 지형도 및 지질도 1부(1:50,000~1:5,000) 4. 기 조사 보고서 5. 사업자등록증 (단, 개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6. 납세증명서 7.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 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1부 2. 중견기업인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 1부 3. 신규일자리창출기업 경우, 고용보험가입자목록 등 증빙 4. 국내생산물반입기업 경우, 해외자원개발 생산물 국내 반입 실적 등 증빙
	본조사 추가서류 1. 탐사계획서 및 도면 1부 2. 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2개 업체 이상) 3. 용역업체 자격증명 서류 *2회 이상 기 지원사업은 자체 사업발표 실시

별첨 1-2. 기초탐사 사업계획서(양식)

기초탐사 사업계획서

(☐ 사전조사 ☐ 본조사)

1. 프로젝트 현황

가) 일반사항

- 위 치 : 국명, 주명, 군명, 읍명, 도시명 등으로 구분기재
- 광 종 :
- 광구현황 및 허가번호(기간포함) : 탐사권/채굴권, 번호, 면적, 유효기간
- 소 유 권 : 현지 광업권 소유권자 기입
- 추진업체 : 한국측 - 신청업체명 기입(주요사업 기입)
외국측 - 현지 광업권자
- 사업단계 : 탐사(기초, 정밀), 개발(F/S완료, 광산개발) 생산단계(가행중)
- 조사희망시기 : 년 월
- 사업참여방식(조건 등) :

나) 지질 및 광상

- 지 질 : 조사신청내 일반적인 지질여건 기재
- 광 상 : 조사신청내 일반적인 광상 및 주요산출 광석광물 등 기재
- 매 장 량 : Resource(자원량), Reserve(매장량)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품 위 : 금속광의 경우, 해당 광종의 품위를 기재 (% , ppm 단위)
석탄광의 경우, 탄종에 따른 탄질(회분, 유황, 열량 등)을 기재

다) 개발여건

- 개발방식 : 노천채광, 갱내채광으로 구분
- 인 프 라 : 조사구역 인근의 도로, 운송, 항만, 노동력, 용수, 기후, 인근 가행광산, 전력 및 통신여건 등을 기재

라) 사업실적 및 경위 (신청한 프로젝트에 대한 탐사, 등의 과거 수행실적을 기재)

- ‘○○년 ○월
- ‘○○년 ○월

마) 추진현황 (신청업체의 해당 사업추진 관련된 연혁 등을 기재)

- ‘○○년 ○월

바) 향후 추진계획 (신청업체의 해당 사업추진 관련된 향후 계획)

- ‘○○년 ○월

사) 위치도 (조사신청지역의 위치도, 그림파일 첨부)

2. 본조사 사업시행계획 내역

가) 지구화학탐사

조사목적	조사방법	세부조사방법				조사기간	투입인원
		면적	시료수	성분수	총성분		

나) 지구물리탐사

조사목적	조사방법	세부조사방법				조사기간	투입인원
		면적	기선수	측점수	총측점		

다) 시굴정

개소	수량(m')	조사기간	투입인원

라) 트렌치

개소	수량(m')	조사기간	투입인원

마) 시험시추

비 고	시추공수	시공량(m)	방향/각도	조사기간	투입인원
암 추					
무암추					
오거시추					

바) 물리검층

종 류	검층공수	검층량(m)	방향/각도	조사기간	투입인원

사) 시료분석

시료수	조사면수	조사방법	조사기간	투입인원

3. 교부받고자하는 보조금 금액

구 분	세 분	수 량	단 가	사 업 비 (천원)	보조신청액 (천원)	비 고
지구화학탐사		시료수 ()개 면적 km^2	원/시료			
지구물리탐사		측선 km 면적 km^2	원/ km			
시굴정	가로×세로 ×높이	개소 m^3	원/ m^3			
트렌치	$(1.0 \times 25.0 \times 2.0)$	$(10)\text{개소}$ $(500)\text{m}^3$	$20,000\text{원}/\text{m}^3$	$10,000\text{천원}$	$8,000\text{천원}$	
시험시추	암 추	공 m	원/ m			
	무암추	공 m	원/ m			
	오거시추	공 m	원/ m			
물리검층		공 m	원/ m			
시료분석		시료수 ()개	원/시료			
계						

해외자원개발조사 기초탐사(본조사) 이행 확약서				
사업내역	사업명		광 종	
	소재지		추진업체	
			연락처	() -
보조대상사업비¹⁾	금	원정(₩)		
기초교부결정액²⁾	금	원정(₩)		
기초교부보조율	<u> </u> % [= 기초보조율 ³⁾ (%) + 우대보조율 ⁴⁾ (%)]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위 보조대상자는 귀 공단이 해외자원개발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통보한 상기 기초탐사(본조사) 사업(교부결정내용)을 붙임 “기초탐사(본조사) 사업시행조건”에 따라 사업기간 내에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그 증거로 이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 기초탐사 사업시행조건 1부.

년 월 일

주 소 : _____
 상 호 : _____
 대 표 자 : _____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 25 -

별첨 1-4.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양식)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

청렴서약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금품·향응을 주고받지 않으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업 수행이 사회발전과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인의 의무 확약서

신청인은 사업 선정시 공단의 원활한 현장조사 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여건 마련을 위한 준비의 의무를 다하고, 안전관리 및 환경조성에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실관계 확약서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에 대한 신청·보고 시 제출된 각종 증빙서류 원본은 신청인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제시하고, 허위·변조와 같이 제출된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시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 할 것을 서약하고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후속경과보고 확약서

신청인은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후속경과보고를 3년간 제출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별첨양식).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첨 1-5. 기초탐사(본조사) 착공보고서(양식)

해외자원개발조사 기초탐사(본조사) 착공보고				
사업내역	사업명			광 종
	소재지			추진업체
			연락처	() -
사업추진현황	용역업체명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계약금	금 원정(₩)		
	계약 및 시행내역			
	구분	사업내역		
	지구화학탐사	개, km ²		
	지구물리탐사	측선 km, 면적 km ²		
	시굴정/트렌치	개소, m ³		
	시험시추	압 추 : 공, m 무 압 추 : 공, m 오거시추 : 공, m		
	물리검층	()검층, 공, m		
시료분석	개			
기타				
년 월 일 현재 위와 같이 기초탐사(본조사)를 착공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불임 : 용역계약서 사본 1부. 용역업체 자격증명 서류 1부. 시행내역별 착공사진 1식.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첨 1-6. 기초탐사(본조사) 경과보고서(양식)

해외자원개발조사 기초탐사(본조사) 경과보고				
사업내역	사업명		광 중	
	소재지		추진업체	
			연락처	() -
사업추진현황	용역업체명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계약금	금 원정(W)		
	집행금액	금 원정(W)		
	주요 수행내역			
	구분	사업내역		
	지구화학탐사	개, km ²		
	지구물리탐사	측선 km, 면적 km ²		
	시굴정/트렌치	개소, m ³		
	시험시추	암 추 : 공, m		
무 암 추 : 공, m				
오거시추 : 공, m				
물리검층	()검층, 공, m			
시료분석	개			
기타				
년 월 일 현재 위와 같이 기초탐사(본조사) 사업추진현황을 보고합니다. ※ 붙임 : 보조사업 수행내역 1부.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첨 1-7. 기초탐사(본조사) 변경보고서(양식)

해외자원개발조사 기초탐사(본조사) 변경보고				
사업내역	사업명			광 중
	소재지			추진업체
				연락처 () -
사업추진현황	용역업체명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일간)
	계약금	금 원정(W ₩)		
	집행금액	금 원정(W ₩)		
	주요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지구화학탐사	개, km ²	지구화학탐사	개, km ²
	지구물리탐사	측선 km, 면적 km ²	지구물리탐사	측선 km, 면적 km ²
	시굴정/트렌치	개소, m ³	시굴정/트렌치	개소, m ³
	시험시추	암 추 : 공, m 무 암 추 : 공, m 오거시추 : 공, m	시험시추	암 추 : 공, m 무 암 추 : 공, m 오거시추 : 공, m
물 리 검 층	()검층, 공, m	물 리 검 층	()검층, 공, m	
시료분석	개	시료분석	개	
기타				
년 월 일 현재 위와 같이 기초탐사(본조사) 사업추진현황을 보고합니다. ※ 붙임 : 보조사업 수행내역 1부. 년 월 일 주 소 : _____ 상 호 : _____ 대 표 자 : _____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해외자원개발조사 기초탐사(본조사) 검수요청서									
사업내역	사업명		광 종						
	소재지		추진업체						
			연 락 처	()	-				
사업추진현황	용역업체명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계 약 금	금	원정(W)						
	집행금액	금	원정(W)						
	주요 수행내역								
	승인물량			검수요청물량					
	지구화학탐사	개,		km ²	지구화학탐사	개,		km ²	
	지구물리탐사	측선	km,	면적	km ²	지구물리탐사	측선	km, 면적	km ²
	시굴정/트렌치	개소,		m ³	시굴정/트렌치	개소,		m ³	
시험시추	암 추 :	공,	m	시험시추	암 추 :	공,	m		
	무 압 추 :	공,	m		무 압 추 :	공,	m		
	오거시추 :	공,	m		오거시추 :	공,	m		
물 리 검 층	()검층,	공,	m	물 리 검 층	()검층,	공,	m		
시료분석	개			시료분석	개				
기타				기타					
년 월 일 현재 위와 같이 기초탐사(본조사) 검수를 요청합니다. ※ 붙임 : 탐사내역 및 사진대지 1식. 년 월 일 주 소 : _____ 상 호 : _____ 대 표 자 : _____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탐사내역(해당사업만 기재)

(년 월 일 현재)

(지구화학탐사)

지역명	승인내역			수행(변경)내역			비 고
	조사면적, km ²	시료수	총성분수	조사면적, km ²	시료수	총성분수	

(지구물리탐사)

지역명	승인내역		수행(변경)내역		비 고
	조사면적, km ²	총측점수	조사면적, km ²	총측점수	

(시굴정)

개소명	승인내역			수행(변경)내역			비 고
	시공량, m ³	가로×세로	방 향	시공량, m ³	가로×세로	방 향	

(트렌치)

트렌치 Line명	승인내역			수행(변경)내역			비 고
	시공량, m ³	폭×심도	방 향	시공량, m ³	폭×심도	방 향	

(시험시추)

시추공	승인내역			수행(변경)내역			변경사유
	시공량, m	방 향	각 도	시공량 m	방 향	각 도	
암추							
무암추							
오거시추							

(물리검층)

검층종류	승인내역			수행(변경)내역			변경사유
	시공량, m	방 향	각 도	시공량 m	방 향	각 도	

(시료분석)

지역명	승인내역		수행(변경)내역		비 고
	시료수	총성분수	시료수	총성분수	

(기타사항)

--

사진대지(해당사업만 기재)

(년 월 일 현재)

(지구물리탐사) : 작업사진



(시굴정 및 트렌치) : 부피(용적) 측정 장면 포함



(본조사) : 작업사진, 시추공명, 시추심도 표기



(물리검층) : 작업사진, 검층공명, 시행일자 등 표기



별첨 1-9. 기초탐사(본조사) 선급금 지급신청서(양식)

해외자원개발조사 기초탐사(본조사) 선급금 지급신청서				
사업 내역	사업명		광 종	
	소재지		추진업체	
			연락처	() -
기초교부결정액		금	원정(₩	)
선급금 신청액		금	원정(₩	)
신청비율		% (※단, 선급금의 경우 기초교부결정액의 최대 50%)		
상기와 같이 기초탐사(본조사)에 필요한 선급금 지급을 신청하오니 첨부한 은행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급금 지급신청 제출서류 1. 이행확약서 및 기초탐사 시행조건 1부. 2. 용역계약서 사본 1부 3. 선급금 사용계획서 1부. 4.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1부. 5. 통장사본(법인명의) 1부. 6.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첨 1-10. 기초탐사(본조사) 보조금 지급신청서(양식)

해외자원개발조사 기초탐사(본조사) 보조금 지급신청서										
사업 내역	사업명		광 종							
	소재지		추진업체							
			연락처	() -						
보조대상사업비		금	원정(₩	)						
기초교부결정액		금	원정(₩	)						
기초교부보조율		_____ % [=기초보조율 (%) + 우대보조율 (%)]								
기 지 급 액 (선 급 금)										
지급신청액										
상기와 같이 기초탐사(본조사)에 필요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오니 첨부한 은행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급신청 제출서류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padding: 5px;">1. 보조사업 수행내역 1부.</td> <td style="width: 50%; 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padding: 5px;">4. 통장사본(법인명의) 1부</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padding: 5px;">2. 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1부.</td> <td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padding: 5px;">5.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td> </tr> <tr> <td style="padding: 5px;">3. 조사결과보고서 및 결과검증에 필요한 자료 1부.</td> <td style="padding: 5px;"></td> </tr> </table>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1. 보조사업 수행내역 1부.	4. 통장사본(법인명의) 1부	2. 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1부.	5.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3. 조사결과보고서 및 결과검증에 필요한 자료 1부.	
1. 보조사업 수행내역 1부.	4. 통장사본(법인명의) 1부									
2. 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1부.	5.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3. 조사결과보고서 및 결과검증에 필요한 자료 1부.										

탐사내역(해당사업만 기재)

(년 월 일 현재)

(지구화학탐사)

지역명	승인내역			수행(변경)내역			비 고
	면적, km ²	시료수	총성분수	면적, km ²	시료수	총성분수	

(지구물리탐사)

지역명	승인내역			수행(변경)내역			비 고
	면적, km ²	측선, km	총측점수	면적, km ²	측선, km	총측점수	

(시굴정)

개소명	승인내역			수행(변경)내역			비 고
	시공량, m ³	가로×세로×심도	방 향	시공량, m ³	가로×세로×심도	방 향	

(트렌치)

트렌치 Line명	승인내역			수행(변경)내역			비 고
	시공량, m ³	연장×폭×심도	방 향	시공량, m ³	연장×폭×심도	방 향	

(시험시추)

시추공	승인내역			수행(변경)내역			비고
	시공량, m	방 향	각 도	시공량 m	방 향	각 도	
압 추							
무 압 추							
오거시추							

(물리검층)

검층종류	승인내역			수행(변경)내역			변경사유
	시공량, m	방 향	각 도	시공량 m	방 향	각 도	

(시료분석)

지역명	승인내역		수행(변경)내역		비 고
	시료수	총성분수	시료수	총성분수	

(기타사항)

조사결과 보고서 수록내용(표준예시)

1. 개요

- 1) 광종, 광업권, 추진업체
- 2) 위치, 지리적 여건 및 인접 광산 현황 등
- 3) 교통 및 개발여건(도로, 철도, 항만 등의 운송, 용수, 전력, 노동력 등)

2. 수행내역

- 1) 사업목적, 수행기관 및 수행기간
- 2) 사업수행내역

(기초탐사)

항 목	승인내역	수행내역	비 고
시 험 시 추	m	m	
○○○	○○○	○○○	

3. 조사결과

- 1) 지질(광역지질 및 광구지질) 및 광상
- 2) 탐사결과
 - 시험시추탐광결과(시추위치도, 단면도 등)
 - 트렌치탐사결과(트렌치 스케치 도면 등)
 - 기타 지원받은 탐사(지구화학탐사, 지구물리탐사, 물리검층 등) 결과 기술
 - 시료분석결과
 - 매장량 및 품위
 - 탐사결과 종합, 조사자 의견 및 효과(향후 탐사 및 개발 방향)
- 3) 첨부 : 지질도, 단면도 및 시추주상도 등 탐사관련 첨부자료 포함

4. 첨부(조사방법 및 탐사 결과에 따른 첨부자료)

1) 공통사항

- 광구도, 조사 위치도, 지질도 및 조사사진

2) 탐사방법별 첨부자료

- 지구화학탐사 : 시료채취 위치도, 시료분석 결과표, 지구화학탐사 결과도
- 지구물리탐사 : 물리탐사이상대 평면도 및 단면도(측선별)
- 시굴정 : 시굴정 위치도, 시굴정 단면도
- 트렌치 : 트렌치 위치도, 트렌치 단면도
- 시험시추 : 시추위치도, 시추주상도, 시추단면도, 시추작업일지
- 물리검층 : 검층공위치도, 검층결과단면도(시추주상도 포함), 작업일지
- 시료분석 : 시료채취 위치도, 시료분석 결과표
- 매장량 산출시 매장량 산출도
- 기타 탐사방법에 따른 조사결과 증빙자료

별첨 1-11.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후속경과보고서(양식)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후속경과보고서

1. 프로젝트 명 : 프로젝트 명, 광종, 위치

2. 추진업체

1) 한국측 : 회사명, 지분현황

2) 외국측 : 회사명, 지분현황

3. 진행상황(구체적으로 작성)

진행상황	실적	비고
지원종류		
탐사현황		
개발·생산현황		
투자현황		
광업권현황		
지분현황		
해외자원개발 신고여부		

년 월 일

주 소 :

연락처 : (전화 ☎)

(휴대폰)

성 명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첨 1-1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해외자원개발 국고보조 조사사업 업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당사는 해외자원개발 국고보조 조사사업 신청 및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신청인 : 업체명,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 휴대폰, FAX 담당자 : 성명, 이메일, 전화, 휴대폰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신청 및 업무 처리 (사업 관리 및 보조금 지급, 수요조사, 고객만족 및 사업개선 설문조사, 정부기관 자료요청 등)	준영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조사사업 신청 및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 : 동의 ☐ 미동의 ☐  담당자 : 동의 ☐ 미동의 ☐

<기타 고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기초탐사 보조금 지급 처리	주민등록번호(신청인) 계좌번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별지 제2호 서식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신청인 : 업체명, 성명, 이메일, 전화, 휴대폰 담당자 : 성명, 이메일, 전화, 휴대폰	해외자원개발조사 관련 행사안내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셔도 조사사업 신청 및 선정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신청자 : 동의 ☐ 미동의 ☐  담당자 :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법인명)	(인)
담당자	성명	(인)

※ 단, 신청자와 담당자가 동일한 경우 '신청자'란만 작성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에 근거한 보조사업의 지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지원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초탐사(사전조사)”라 함은 해외자원개발 희망업체가 입수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광해광업공단 직원 및 민간 기술인력의 현장조사 지원을 통해 지원 타당성 판단 및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초탐사(본조사)”라 함은 해외자원개발 희망업체가 지원신청한 초기단계 탐사타당성 조사사업에 대하여 지구화학탐사, 지구물리탐사, 트렌치, 시굴정, 시험시추 및 물리검층 등에 필요한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국고보조 교부결정 승인신청” 이라 함은 심의위원회에서 국고보조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경비를 광해광업공단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자원개발 전문 심의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매년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광물자원팀 1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인 등 2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자원개발 관련 학계 또는 자원개발 관련 전문가 6인, 법률 또는 회계·세무전문가 1인을 위촉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는 간사 업무는 광해광업공단에서 수행한다.

제4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해외자원개발 조사신청사업(기초탐사) 중 국고보조 지원대상사업 선정
2. 선정된 보조대상사업에 대한 지원결과, 효과 평가 및 후속 추진계획 검토
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관련된 사항
4. 기타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심의위원회의 소집절차 등)

- ① 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은 심의위원 1/3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해당 사업팀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이전까지 '보조지원사업 심의(안)(이하"심의(안)")'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간사는 심의(안) 내용에 대해 해당 사업팀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위원회 개최 3일 이전에 심의(안)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간사는 심의(안)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심의위원에게 이를 보고하고 심의위원의 결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집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⑤ 간사는 해당 사업팀이 신청사업을 검토한 자료를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할 대상사업을 정한 총괄표를 작성한다.

- ⑥ 해당 사업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 사업의 자료제공 및 심의(안) 설명 등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 ① 각 사업별 심의(안)은 해당 사업팀장이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②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업팀의 심의(안)을 기초로 보조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완료 후 지원결과, 효과 및 후속 추진계획 등을 평가한다.
- ③ 심의위원회는 보조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부조사자 공동참여 사업을 선정할 수 있고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외부조사자를 지정 하거나 관련 기관을 추천한다.
-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장도 표결권을 행사한다.
- ⑤ 심의위원회 운영은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전의 신속한 검토·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서면심의로 안전 심의를 추진할 수 있다.
- ⑥ 심의위원회는 대상 사업의 충분한 심의를 위해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 의결한 후 추가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자료 보완을 전제로 조건부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2 (회의 비공개 원칙 및 비밀누설 금지)

-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의위원은 윤리 서약서에 서약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1.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2.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 및 회의록을 포함한다) 및 평가서
 3.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 및 광해광업공단 직원은 심의 과정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심의위원의 제척, 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국고보조 신청업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국고보조 신청업체의 대주주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② 심의위원회 개최전 위원은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며, 위원 본인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지원대상사업 평가방법)

심의(안) 심의시 심의위원은 대상사업 평가 후 선정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사업별 소요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① 간사는 심의 결과의 중요사항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 관련 사업팀에 통보하고 선정된 프로젝트는 ‘국고보조 조사사업 교부결정 승인

신청(안)'에 반영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즉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통보받은 광해광업공단 선정사업의 해당 사업팀은 선정된 프로젝트가 조기에 착수가 가능하도록 해당업체에 지체없이 통보한다.